

사외 유출 금지

2024년도 단체교섭 조합원 설명자료

Contents

- I. 2024년 단체교섭 가합의(안) 요약
- II. 최고보상
- III. 고용안정
- IV. 공정인사
- V. 최강복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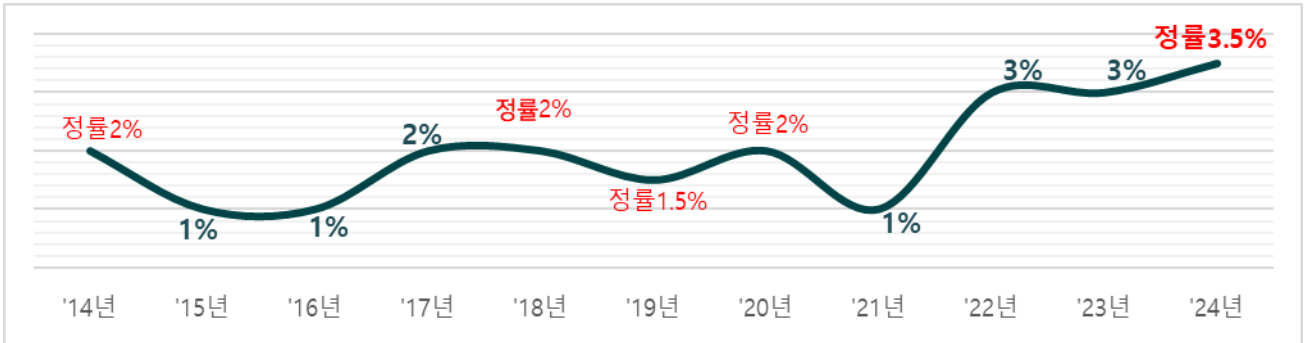
I. 2024년 단체교섭 가합의(안) 요약

구분	요구안	합의안	지급(시행) 일자
임금 인상	임금인상 6.8%	① 기본급 3.5% (정률) 인상 ② 일시금 300만원 지급	① 2024.8.23 (1.1일자 소급) ② 2024.8.23
	초과근무수당 기본급화	초과근무수당 개선 - 2시간 기본급화, 휴가 감액기준 폐지 긴급출동 지원 기준 및 근로시간 관리 체계 개선	2025.1.1
	급식보조비 현실화	급식보조비(일 7천원→11천원) 및 숙박비 상한(일 6만원→8만원) 인상 ※ 서울숙박 일 10만원, 감독출장시 증빙제출必	2024.10.1
고용 안정	정년연장	미합의	
	임금피크제 폐지	임금피크제 개선 (3년 → 2년) 90%(57세)/80%(58세)/80%(59세)→80%(58세)/80%(59세)	2025.1.1
인사/제도	밴드체계 상하한선 개선	Pay-Band 개선 협약인상 당해년도 상·하한반영 ^{24년~} , 상한 5% 상향 ^{24년 한}	2024.1.1 (소급)
	고과 및 승진제도 개선	U등급 폐지 (필요시 N등급 10% 이내 부여가능)	2024년 인사평가지
		산업안전관리자 역할급 인상 월 4.2만원→8.4만원	2025.1.1
복지	자녀교육보조비 개선 : 만 5~15세 60만원→만 0~18세 100만원 ※ 영유아보험/자녀교육프로그램 폐지, 고교학자금은 자녀교육보조비 중복불가		2025.1.1
	신생아 첫만남 대부 신설 (자녀 1인당 최대 1억원, 총 기금대부한도 2억원 이내)		2025.1.1
	육아휴직 무급기간(2년차) 급여지원 : 월 150만원		2025.1.1
	육아기 직원 근로시간 단축 및 근무방식 개선 ※ 자녀대상·사용기간 확대, 2시간 이하 단축 급여 지원, 시간대별 재택/사무실근무 병행 가능 등		2025.1.1
	초등자녀 돌봄 휴직 제도 신설 (자녀 1인당 최대 1년, 무급)		2025.1.1
	배우자출산휴가(유급) 개선 10→20일(3회 분할, 출산 120일 내)		2024.10.1
	산후조리비용 지원 (자녀당 300만원)		2024.10.1
	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		2024년 中

Ⅱ. 최고보상

□ 실질적인 임금인상과 땀에 가치를 더 크게 돌려주는 공정한 보상(실질임금)

1. 역대 최고의 임금인상 : 협약인상을 정률 3.5% 달성



- ▷ 지급대상 : 합의일 현재 재직자 (G직)
- ▷ 적용시기 : 2024년1월1일자 (소급적용)
- 임금인상 소급분(1.1~7.31) 지급일 : 2024년08월23일(금) *별도계좌 지급
- 8월 급여분부터 인상분 반영 지급
- 2024년도 연봉조회 (2024년 단체교섭 반영)
- 조회기간 : 2024.08.22(목) 부터
- 조회방법 : ERP-HR > 급여 > 조회 > 연봉내역 > 2024년도 기준연봉 조정내역

2. 일시금(300만원) 지급

- ▷ 지급대상 : 합의일 현재 재직자 (G직) *전문경력직, 재적전출자, 무기계약직 포함
- ▷ 지급액 : 1인당 300만원 (별도계좌)
- 중도입사자 및 휴직자는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
- ▷ 지급일 : 2024년08월23일(금)

▣ 협약인상 소급분 및 일시금 금액 예시 (단위 : 만원)

월 기본급 (가정)	소급액 (1~7 월)				일시금	합계
	기본급	초과근무수당	성과급*	계		
300 만원	74	10	36	119	300	419
400 만원	98	13	48	159	300	459
500 만원	123	17	60	199	300	499

*성과급 2 월 100%, 3 월 100%, 5 월 70%, 7 월 70% 기준 (부서 성과에 따라 상이)

*초과근무수당 및 초과근무가산금 등은 복무 실적에 따라 상이

3. 초과근무수당 기본급화

① 초과근무수당 2H 기본급화

구분	기존	개선
2시간 기본급화	· 고정인정시간(22시간) - 실OT 22시간 초과시 지급	· 고정인정시간(20시간) + 나머지 2시간은 기본급화 - 임금총액유지 기본급/성과급 비중 확대 - 실OT 20시간 초과시 지급

② 휴가일수에 따른 감액 전면 폐지

구분	기존	개선
휴가감액	· 해당 월 영업일수비 휴가일수에 비례하여 고정인정시간 차감	· 휴가 감액 전면 폐지 - 병가, 출산휴가 등 장기휴가 포함

③ 긴급출동보전비 별도보상체계 마련

구분	기존	개선
긴급출동 보전비	· 초과근무수당체계로 통합 운영	· 긴급출동보전비 별도 지급 - 모바일 출퇴근 체크 폐지 (직책자가 출퇴근시간 관리 기록) · 연장근로시간과 긴급출동시간은 현재와 동일하게 통합 관리 - 고정 인정시간 초과시 실OT 지급

* 시행일자 : 2025년 1월1일

* 긴급출동비 세부개선 사항 : 별첨 참조

4. 급식보조비 및 출장비 현실화

① 급식보조비 4,000원 인상: 7,000원 → 11,000원/일

- 21일 기준 월 14.7만원(연 176.4만원) → 월 23.1만원(연 277.2만원) / 출장 및 긴급출동에 따른 급식비 인상

※ 구내식당 지원금 폐지

② 출장 숙박비 현실화 : 서울 10만원/박, 기타지역 8만원/박

- 감독출장 시행시 향후 증빙 제출 必

* 시행일자 : 2024년 10월1일

Ⅲ. 고용안정

□ 일터에 바친 젊은 날의 노력과 땀의 보상

1. 임금피크제 감액기간 및 감액률 축소 : 3년 50% → 2년 40%

- ※ 임금피크제도 지속 개선을 통한 실질임금 확보
- 임금피크 적용시기를 만57세→만58세로 변경
- 임금피크 적용기간 및 감액률은 3년간 △50% →2년간 △40%로 축소

구분	기 존 (3년간 △50%)	개 선 (2년간 △40%)										
적용기간	만 57세 ~ 만 59세	만 58세 ~ 만 59세										
피크임금	만 57세에 도달하는 달의 월 기본급	만 58세에 도달하는 달의 월 기본급										
임금 지급률	<table border="1"> <tr> <td>57세</td> <td>58세</td> <td>59세</td> </tr> <tr> <td>90%</td> <td>80%</td> <td>80%</td> </tr> </table>	57세	58세	59세	90%	80%	80%	<table border="1"> <tr> <td>58세</td> <td>59세</td> </tr> <tr> <td>80%</td> <td>80%</td> </tr> </table>	58세	59세	80%	80%
	57세	58세	59세									
90%	80%	80%										
58세	59세											
80%	80%											

* 시행일자 : 2025년 1월 1일 ※ 단, 시행일 이전까지는 기존 임금피크지급률 적용

※ 임금피크제 개선에 따른 희망퇴직 제도 대상

구분	기 존	개 선
신청자격	만 57세 도래자	만 58세 도래자 (단 2025년 限 만57세 도래자 포함)

* 희망퇴직금 지급산식은 기존과 동일

IV. 공정인사

□ 의지를 꺾는 인사제도가 아닌 의지를 북돋는 인사제도

1. 밴드임금체계 개선으로 실질임금 확보

① 협약인상을 소급분 지급시기와 협약인상을 밴드 상하한값 동시 적용

※ 기존 : 상한초과자는 1년간 분할 지급 및 익년도 소멸, 개선 : 상한초과 미발생 및 익년도 반영

②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밴드임금체계 상한선 5% 추가반영(2024년 한)

※ 당해직급 장기체류 및 당해직급 고성과에 따른 밴드상한자 발생 최소화로 실질임금 확보

구분	기존	변경
① 적용시기	· 당해년도 임금협약 결과 반영 차년도 1.1일자 적용	· 당해년도 임금협약 결과 반영 당해년도 1.1일자 소급 적용
② 신설		· 상한값 추가 5% 상향조정(24년 限) ※ 조정된 상한과 하한의 중간값으로 분위 재설정

* 시행일자 : 2024년 1월 1일(소급적용)

2. 조합원 고과제도 개선 : U고과 폐지 및 필요시 N등급(10%)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

※ 성과에 관계없는 일률적 부여한 U고과 폐지 및 N고과 부여 방식 변경을 통한 조합원 사기 진작

○ 평가등급 : 기존 5단계 → 4단계로 축소하고 최하등급(N등급)은 부서장이 판단, 부여가능

상대평가				유연평가				
• 대상: 일반부서 • 방식: 평가등급별 고정 분포비				• 대상: 미래사업 관련 부서 • 방식: E등급 이하 자율 분포비				
S	E	G	N	구분	S	E	G	N
10%	30%	50%	(10%)*	직원	10%	부서 자율		
* N등급 대상자 없을 시 G등급(50%→60%)으로 가산 가능 ※ 기존 N등급 구제제도*는 폐지 * 부서 전체 N등급의 최대 30% 이내 G등급으로 조정								

* 시행일자 : 2024년 인사평가시

3. 산업안전관리자 역할급 인상

- 지급대상 :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
- 지급내역 : 역할급 월 4.2만원 → 월 8.4만원(2배 인상)

※ 역할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과 연동되어 지급되는 법정수당(초과수당, 휴일수당 등) 인상영향 발생

* 시행일자 : 2025년 1월 1일

V. 최강복지

□ 생애주기와 특성에 맞는 세심한 복지 케어

1. 자녀교육보조비 지원대상 확대 : 5~15세/60만원 → 0~18세/100만원

※ 자녀 나이에 따른 분산하여 지원한 복지제도의 통합으로 실질적인 복지지원 확대

구분	기존	개선
대상 및 지원금	· 만 5~15세 · 60만원/년	· 만 0~18세 · 100만원/년 * 기존 고교학자금은 유지하되, 자녀교육보조비와 택일 가능

※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영유아^{0~4세} 보험 및 초중고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폐지

* 시행일자 : 2025년 1월 1일

2. 신생아 첫만남 대부 신설

○ 신생아 출산 시 사내대부지원제도 개선으로 출산/양육 관련 비용 부담 완화

구분	내용
대부금액	· 신생아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 *직원당 기금대부 통합한도 2억원 이내
이자율	· 1%
상환기간	· 12년 또는 13년(거치기간 1년 포함)

※ 실질적 수혜를 위한 세부사항은 노사간 추가 협의 예정

* 시행일자 : 2025년 1월 1일

3. 육아휴직 무급기간 급여지원

- 지원대상 :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
- 지원금액 :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육아휴직 2년차에 월 150만원 (최대 12개월)

구분		기존	개선
지원 금액	1년차	· 정부지원금 - 통상임금 ^{기본급} 의 80% 지원 (월 상한액 150만원, 하한액 70만원)	· "좌동"
	2년차	· 무급	· 월 150만원 (최대 12개월) - 지급일: 매월 25일 정기급여계좌 - 정부지원금 변동시 연동 예정
총 지원금 ^{상한액 기준}		· 1,800만원	· 3,600만원 *정부지원금 변동시 연동

* 시행일자 : 2025년 1월 1일

4. 육아기 직원 근로시간 단축 및 근무방식 개선

- 근로시간 단축 : 자녀 대상·사용기간 확대, 2시간 이하 단축 급여 지원^{신설}
- 근무방식 개선 : 근무일 재택과 사무실 근무 혼용 가능 (가칭 'Dual Work' 신설)

구분		기존						개선					
대상		·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						·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					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	기간	· 최대 2년 - 1년 + 육아휴직 미사용기간						· 최대 3년 - 1년 + 육아휴직 미사용기간(2배 가산)					
	급여	· 단축시간 비례 차감 (단위: %)						· 단축시간 2시간 이하 급여 미차감 (단위: %)					
		단축시간	1H	2H	3H	4H	5H	단축시간	1H	2H	3H	4H	5H
기본급		875	75	625	50	375	기본급						
	성과급						성과급	100	100	875	75	625	
	초과수당	0	0	0	0	0	초과수당						

재택/사무실 근무 혼용제도 신설 (가칭 'Dual Work')	· 사무실 또는 재택근무 중 택일 · 연속근무 必	· 시간대별 재택 사무실 근무 병행 가능 · 근무시간 분할 가능(4시간 이상 근무 必) - 예 9~14시 ^{사무실} 근무 → 14~15시 이동, 15~19시 ^{사무실} 재택근무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* 시행일자 : 2025년 1월 1일

5. 초등자녀 돌봄 휴직제도 도입

구분	내용
대상	· 휴직 개시일 기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가진 직원 (G직 / 근속 6개월 이상 근무자 / 부부사원 동시 사용 가능)
휴직기간	· 자녀 당 최대 1년 (최소 신청 30일 이상 / 분할 2회, 최대 3회 사용 가능)
근로조건	· 급여 및 근속기간 : 급여(무급), 근속기간 포함 · 평가 : N/R(G/G 처우) *평가기간 중 휴직 혹은 평가공시일 기준 3개월 미만 근무자 대상 · 복지 : 휴직기간 중 재직자와 동일하게 지원
신청방법	· 시스템 신청/승인 (2025.1.1 일자 적용 예정) · (전사) 각 기관 소속부서장 검토/승인요청 → 인사담당자 최종 검토/승인 · 휴직개시 30일 전까지 신청 접수(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최소 7일 전)
제출서류	· 가족관계 증명서, 재학 증명서, 휴직 서약서, OA반납 확인서

* 시행일자 : 2025년 1월 1일

6. 배우자 출산휴가 개선

○ 대상 : 배우자가 출산한 직원

○ 지원기준

구분	기존	개선
휴가일수	· 10일 (유급)	· 20일 (유급)
사용기간	· 90일 내 신청 1회 분할 가능	· 120일 이내 신청 3회 분할 가능

* 시행일자 : 2024년 10월 1일

7. 산후조리비 지원제도 신설

구분	내용
대상	· 자녀를 출산한 직원 (본인 및 배우자)
지원금	· 자녀당 300만원

* 시행일자 : 2024년 10월 1일

※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

-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및 출연시기에 관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
협의회에서 다룰 예정

[별첨] 긴급출동 지원 기준 및 근로시간 관리 체계 개선

□ 취지 : 근무시간 외 통신시설 장애 발생 대응을 위해 출동한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

○ 긴급출동 지원 기준 개선 및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근로시간 관리 체계 강화

□ 주요 내용

○ 대상 : 통신시설 장애 발생 및 시스템 버전업 작업 등 근무시간 외 출동된 작업자

구분		기 준	개 선
지원 기준	초과 근무 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장근로시간과 긴급출동시간을 통합하여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연봉월정액 × 1.5 ÷ 209 × (연장근로시간+긴급출동시간) 고정인정시간 초과시 실OT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초과근무수당 고정 OT와 긴급출동보전비를 구분하여 지급 기준연봉월정액 × 1.5 ÷ 209 × 연장근로시간(고정OT) 긴급출동보전비는 별도 지급(별도계좌) 연장근로시간과 긴급출동시간은 현재와 동일하게 통합 관리 고정 인정시간 초과시 실OT 지급
	긴급 출동 보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비(13,000원), 식비(7,000원/식), 간식비(3,000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긴급출동보전비 지급 - 3시간 이상 7만원 3시간 미만 4만원 (2021년 기준 대비 1만원 인상) · 식비: 11,000원/식 일비/간식비: 좌동
근로 시간 관리	출퇴근 체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모바일 Kate 또는 PC-OFF 체크 직원이 체크(연장근로시간 자동승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모바일 Kate 체크 폐지 직책자가 출퇴근시간 일괄 기록
	연장근로 /긴급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전 신청 및 직책자 승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좌동

* 시행일자 : 2025년 1월 1일 ※ 법정근로시간 준수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예정

구분	기 준(2021년 기준)	개 선
3시간 이상	83만원 긴급출동보전비 60+식비 0.7+일비13+간식비 03	9.7만원 긴급출동보전비 70+식비 1.1+일비13+간식비 03
3시간 미만	50만원 긴급출동보전비 30+식비 0.7+일비13	64만원 긴급출동보전비 40+식비 1.1+일비13

* 식사 1 식 포함시